

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엄용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19.

발의자 : 엄용수 · 박덕흠 · 경대수
유기준 · 권석창 · 조경태
이종명 · 이현재 · 추경호
이학재 · 최도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증권거래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증권거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·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,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·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가 납세자에게는 또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.

이에 질문·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,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 후단 신설).

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문하거나 검사하여야 하며,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질문권 또는 검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